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7. 11 선고 2024나101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7. 11 선고 2024나10191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2. 7 선고 2023가합100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항소인 1. A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변론종결 2024. 6. 20.

판결선고 2024. 7. 11.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2. 7. 선고 2023가합1004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피고 A은 원고에게 603,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에게 379,819,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0. 체결된 양도계약을 373,166,453원의 한도 내에서, 제1심판결 별지 2(이하 ‘별지 2’라 한다)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5. 체결된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689,280,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회사와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3(이하 ‘별지 3’이라 한다)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8. 체결된 양도계약을 477,600,6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77,600,6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4행부터 제4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1993. 5. 26. 보증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및 1995. 11. 23. 보증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원고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993. 5. 26. E으로부터 220,270,400원을, 1995. 11. 23. F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2) 이후 D이 위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8. 6. 26. E에 100,000,000원, F은행에 218,424,65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001. 11. 29.부터 2022. 11. 19.까지 상환 받은 합계 165,250,963원을 원금에 충당하여 2023. 1. 25. 기준 대위변제원금 잔액은 153,173,694원, 위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83,682,581원, 미수위약금은 1,368,480원이다.

3)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D,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0254)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30.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802,700원 및 그중 대위변제원금 잔액 163,225,777원에 대하여 1998. 6. 26.부터 1998. 8.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같은 연

20%의, 1999. 1. 1.부터 2003. 12. 4.까지는 같은 연 18%의, 200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선행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가단8257)에서 명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 확정판결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① 2019. 3. 10. 기준 합계 959,300,019원(= 대위변제원금 잔액 153,173,694원 + 확정지연손해금 183,682,581원 + 미수위약금 1,368,480원 + 연체이자 621,075,264원), ② 2020. 10. 15. 기준 합계 1,008,399,531원(= 대위변제원금 잔액 153,173,694원 + 확정지연손해금 183,682,581원 + 미수위약금 1,368,480원 + 연체이자 670,174,776원), ③ 2021. 1. 8. 기준 합계 1,015,533,649원(= 대위변제원금 잔액 153,173,694원 + 확정지연손해금 183,682,581원 + 미수위약금 1,368,480원 + 연체이자 677,308,894원)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2, 3, 4행의 “피고 회사는”부터 “취임하였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회사는 2020. 9. 15. 설립될 당시에는 C이 사내이사였다가, 2022. 4. 18. C이 사임하고 피고 A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3. 7. 10. 피고 A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C이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11행의 “별지 2021. 2. 8.”을 “2021. 2. 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C이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였다. C의 딸인 피고 A은 2022. 4. 18. C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자 그 뒤를 이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7. 10.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다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2행의 “1) 관련 법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2행의 “종합하며”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8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17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정인제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 결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비용으로 복토공사를 시행하였고, 일부 부동산의 지목이 변경되는 등 위 각 부동산의 가치가 대폭 상승하였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가액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을 통해 확립된 법리인 점,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질은 사해행위에 의해 이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고,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것인데,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존부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원물의 가액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③ 우리 사회의 거래통념과 경험에 비추어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의 비용으로 복토공사가 시행되었다거나,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위 각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피고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1. 선고 2003가합4940 판결을 원용하나,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04나28957)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05다69144) 그대로 확정된 점, ⑤ 피고 A은 C의 자녀이고,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C의 1인 회사였다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 AH, AI, 피고 A에게 신주가 배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임원 구성 등에 비추어 그 이후로도 사실상 C의 1인

회사이거나 적어도 C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종래 확립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 법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표현덕, 판사 박지연, 판사 이병호